

1.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사항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
- 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3조)
- 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 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 마.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 (제77조, 제99조, 제116조)

- 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 (제7조 등)
- 사. 위 가~마 관련 서식 66건 개정 및 14건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재수사 요청”을 “소재확인 요청”으로, “소재수사 결과”를 “소재확인 결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법경찰관리의 의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의”를 “공소청 직원의”로, “검찰청 직원이”를 “공소청 직원이”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를 “(고위공직자범죄등 ·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지통보서”를 “인지 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을 제시할 쟁점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방법과 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

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요청에 따른 의견서에 따른다.

제55조의3제1항제2호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영장을 복사한 사본”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보고하는”을 “통보하는”으로, “보고서”를 “통보서”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법 제245조의5제1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휘”를 “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제2항 중 “지휘”를 “의견”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제1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제1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재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제80호의2서식의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74조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7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7조”를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편 제6장(제78조)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를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등)”으로 한다.

제89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법경찰관은 혼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89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해양보호생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

제9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1호의3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 통지에 불송

치 결정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197조의2제2항”을 “법 제197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7호의3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제10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5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등)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5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107조의3(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의 관리)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

과 미통보 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자화 대상문서 중 전자화가 불가능한 문서는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51조제3항제2호는”을 “제51조제3항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제1항 중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245조의7제1항”을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5조의7제2항”을 각각 “법 제245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를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를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별지 제128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 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 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부터 별지 제64호

서식 까지, 별지 제64호의6서식, 별지 제64호의7서식, 별지 제64호의9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부터 별지 제83호서식 까지,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1호서식 부터 별지 제96호서식 까지, 별지 제98호서식 부터 별지 제101호서식 까지, 별지 제101호의2서식, 별지 제101호의3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15호서식 부터 별지 제1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1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2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5호서식 부터 별지 제1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의견요청서(중요사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의견요청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의견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의견서(중요사건 · 협의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8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관한 검사 (검사명)의 (의견 ·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기소중지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참고인중지한 사건의 참고인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화	(주택)		(직장)		
대상사건	피의자					
	죄명					
	송치일자					
	송치번호					
	사건번호					
발견경위						
비고						
첨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귀청에서 요청한 소재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소재확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분					
	직	업					
	주	거					
	전	화	(본인)		(직장)		
대상 사건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소재확인 결과							
비 고							
첨 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협의요청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협의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협의요청서(관서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사건 담당자 협의 사항

관서장 협의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주 요			
진 행 상 황			
담 당 팀 장	소속 계급 담당자		☎ 연락처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이의제기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담당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에 제기)
 - 6개월 이상 수사지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 그 밖에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할 수 있고,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등 조치 가능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 ※ 고소인·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죄명			
결정종류			
주요내용			
담당팀장	소속 계급 담당자		☎ 연락처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0000.00.00.	접 수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종 류	1. 입건 전 조사종결 (선택) 2. 입건 전 조사중지 (선택) 3. 이 송 (선택) : 이송관서명(☎: 전화번호) 4. 공람 후 종결 (선택)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소속 계급 담당자	☎	연락처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 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이의제기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담당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에 제기)
 - 6개월 이상 수사지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 그 밖에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할 수 있고,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등 조치 가능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우리 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발	견	일	시				
발	견	장	소				
신	고	일	시				
변 종	사 별	원	인				
		방	법				
변 인	사 적	사 향	성	명 :			
			주	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발 인	견 적	사 향	성	명 :			
			직	업 :			
			주	거 :			
			변사자와관계 :				
발				견	경	위	

피 의 자 (피 조 사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사 인 및 의 사 소 견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			
사망추정시각				
사 체 의 상 황 (위 치, 착 의, 외상 유무등사체의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증 거 품 (소지품, 향기등범행공 용물, 유서, 일지등 존 재 사 항) 및 참 고 사 항				
유족의진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관계인진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사 건 개 요				
경 찰 조 치 및 의 건				
담당경찰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

제0000-000000호(0000.00.00. 접수) 변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사 인	직접사인 : 간접사인 :
처 리 결 과 및 의 건	
첨 부 서 류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 속			
	직위(직급)			
죄	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범죄등을 인지하였으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죄 명			
공 소 시 효		(단기) 0000.00.00. (장기) 0000.00.00.	

인지 일자 및 경위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 여부	체포 () 구속 () (해당하는 경우에만 ○ 표시)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체포영장 신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인치장소에 인치하고 구금 장소에 구금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두이상의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00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시				
인 치 한 장소				
구 금 한 일시				
구 금 한 장소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다음 피체포자를 긴급체포 불승인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사유		
석 방 한 일시		
석 방 한 장소		
불 승 인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현행범인)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비 고		

소속관서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구속장소명** 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 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요청에 따른 의견서

아래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검사명)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검사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사법경찰관의 의견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영장반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영 장 반 환 사 유		

첨 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석방 통보서(체포영장)

다음 피의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관직및성명		
체 포 영 장 번 호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긴급체포)

다음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관식및성명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mm × 297mm(백상지 80g/㎡)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려 하니 구속취소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영 장 번 호		-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유				
구 속 취 소 사 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구속취소)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구 취 소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아래와 같이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정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협)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0000.00.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협)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 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협)**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
하러 하니 **0000.00.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협)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대상계좌	계좌명의인	[] 피(협)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의내용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 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 사유					
입찰 전 또는 입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 직 · 성 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장 소 · 신 체 또는 물건		
긴 급 압 수 한 물 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 수색·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 행 을 한 사 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진행번호: 0000보전00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소속관서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0000-000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
대 상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로부터 00일(60일 이내)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전자우편(****@****.**)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UTC+9] 0000. 00. 00. 00:00부터 0000. 00. 00. 00:00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소속관서

진행번호: 0000보전00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소속관서

제 목: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사법경찰관

㉠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합니다.

보 전 된 전 자 정 보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집행일로부터 00일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음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00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0000. 00. 00.
- 보전요청 기간: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0000. 00. 00.
- 보전요청 기간: 00일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소속관서

제 0000-00000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소속관서

제 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의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0000-000호 000위반
승 인 대 상 보 전 요 청	0000보전00호
긴 급 보 전 요 청 일 시	0000. 00. 00. 00:00
긴 급 보 전 요 청 한 전 자 정 보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음
범 죄 사 실 및 긴 급 보 전 요 청 사 유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음
긴 급 보 전 요 청 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별지 1]

긴급 보전요청한 전자정보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UTC+9] 0000. 0. 0. 00:00부터 0000. 0. 0. 00:00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0000. 0. 0. 00:00[우리나라 표준시인 UTC+ 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긴급 보전요청 사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이 필요하나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소속관서

진행번호: 0000보전취소00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소속관서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에 대한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0000-000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0000보전00호(0000. 00. 00. 보전요청)
취 소 사 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필요성 소멸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가환부)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가환부 의견, 재의견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위탁보관)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의견, 재의견**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폐기)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에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어 폐기 의견, 재의견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대가보관)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에 부패(멸실 등)의 우려가 있어 대가보관
의견, 재의견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내용 많을 시 별지로 첨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mm × 297mm(백상지 80g/㎡)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처분결과	비 고

재의견 요청 내용	
재의견 내용	
처분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증거보전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 거 보 전 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증인신문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증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러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 명						
	직 업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건기록의 등본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요 구 일 자	
요 구 번 호	
사건기록등본 송부 관련 의견	
붙 임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요구 일자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시정조치요구 내용			
이행 결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사건 이송 통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송부내역	서 류		
	증 거 품	품 명	수 량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기타참고사항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각급 공소청의 장

제 목 :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제61조제3항·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0000-000000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징계요구 요지			
처리 결과			
이유			

소속관서장

안내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연령 세)

주 거 :

본인은 0000.00.00. 00:00경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위 확인인

위 고소인등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음(위 고소인등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Korea Coast Guard Station OOOOO)

전화(Telephone) : 전화번호

팩스(Fax) : 팩스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To) : 수신

제 목(Subject) :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 (Arrest(Detention) Notification)

1. 피의자(Personal details of the arrested)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2. 체포 일시 및 장소 (Date & Place of arrest)

체포 일시 :

체포 장소 :

3. 사건개요(Details of the case)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계급

소속관서

(Korea Coast Guard Station 00000)

전화(Telephone) : 전화번호

팩스(Fax) : 팩스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To) : 수신

제 목(Subject) :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Death Notification)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 (Officer in charge)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행정협정 담당검사)

제 목 :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

아래와 같이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련자 인적사항

성 명 :
소 속 :
군 번 :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번호 :
주 거 :
국 적 :

2.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3. 범죄사실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몰수·부대보전 신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 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요지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몰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몰수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대보전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부대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추징보전 신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추징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추징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의 (전부·일부)취소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추정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취소 대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부취소 시 범위		(기존 추정보전액: 원) 취소신청 추정정보전액: 원 잔여 추정보전액: 원
추정보전명령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죄명			
결정일	0000.00.00.		
결정종류	1. 송치 (선택) : 송치관서명 (☎: 전화번호) 2. 이송 (선택)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선택)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소속 계급 성명		☎ 연락처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죄명			
결정일	0000.00.00.		
결정종류	1. 송치 (선택) : 송치관서명 (☎: 전화번호) 2. 이송 (선택)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선택)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소속 계급 성명		☎ 연락처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0000.00.00.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0000.00.00.			
결 정 종 류	불송치 (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혐의없음.))			
주 요 내 용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 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0000.00.00.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0000.00.00.		
결 정 종 류	불송치 (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 혐의없음.))		
이 유	별지 첨부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담 당 팀 장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소속관서장

※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이의·심의신청 등 방법

-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단, 고발인은 무고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에 명시된 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이 통지서에 첨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민원콜센터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 별지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사건 담당 해양경찰관서 및 결정 내용

해양경찰서 (또는지방해양경찰청)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불송치(각하 / 공소권없음 / 죄가안됨 / 혐의없음)

☐ 이의신청 이유

--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류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

0000.00.00.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0000.00.00.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0000.00.00.		
결정종류	1. 송 치 (선택) : 송치관서명 (☎: 전화번호) 2. 이 송 (선택)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참고인증지) (선택) 4. 불 송 치 (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 혐의없음.)) (선택)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소속 계급 성명 ☎ 연락처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0000.00.00.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0000.00.00.		
결정종류	1. 송 치 (선택) : 송치관서명 (☎: 전화번호) 2. 이 송 (선택)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 (선택) 4. 불 송 치 (결정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예 : 혐의없음.)) (선택)		
주요내용 및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소속 계급 성명 ☎ 연락처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소속관서장

【 별 지 】

【 주요내용 】

- 송치 : 피의자 000에 대한 사기
- 이송 : 피의자 000에 대한 사문서위조
- 수사중지 : 피의자 000에 대한 사문서위조
- 불송치 : 피의자 000에 대한 횡령

【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 】

별지 첨부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시정조치요구 제도 및 수사중지 이의제기 관련 안내>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민원콜센터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 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등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단, 고발인은 무고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에 명시된 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이 통지서에 첨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신청 가능)

【 별 지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사건 담당 해양경찰관서 및 결정 내용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불송치(각하 / 공소권없음 / 죄가안됨 / 혐의없음)

□ 이의신청 이유

--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류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

0000.00.00.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소속관서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

다음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결 정 일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공 소 시 효	장 기			
	단 기			
반 환 기 한				

참 고 사 항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합니다.

소재발견 대상자	성 명	
	사건관련신분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대상 사건	사 건 번 호	
	송 부 일 자	
발 견 경 위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사건송치서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죄명				
수사단서				
사건번호				
체포구속				
석방				
결정일				
결정근거				
증거품				
비고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추가송부서

다음과 같이 추가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송 치(송 부) 일	
사 건 번 호	
결 정 일	
추가송부서류 및 증거품	
비 고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보완수사요구 내용		
보완수사 결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행기간		0000.00.00.
연장신청 기간		0000.00.00.
보완수사요구 내용		
기간 연장 신청 사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보완수사요구 내용		
종합수사 결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 별 지 】

【1. 피의자 인적사항 】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행기간		0000.00.00.
보완수사요구 내용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 별 지 】

【1. 피의자 인적사항 】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각급 공소청의 장

제 목 :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2항·64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0000-000000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직무배제요구 요지			
처리 결과			
이유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다음 불송치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결 정 일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공 소 시 효	장 기			
	단 기			
반 환 기 한				

참 고 사 항

소속관서장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재수사 결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재수사 요청 내용				
재수사 결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사건 담당 경찰관서 및 결정 내용

해양경찰서 (또는지방해양청)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불송치(각하 / 공소권없음 / 죄가안됨 / 혐의없음)

□ 이의신청 이유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류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

0000.00.00.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수사 중 이의제기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법정대리인		
대상사건	죄명		
	수사관서		사건번호
이의제기 사유 (해당란 체크)	☐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			
첨부서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인 (서명 또는 인)
 소속관서장 귀하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귀하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사건번호		
조치결과	1. 수사공무원 교체 (선택) : 교체 수사관 00팀 00 000 (☎: 연락처) 2. 수사경과 및 향후 수사계획의 제시 (선택) 3. 그 밖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선택) 4. 이의제기 사유 없음(별도 조치 없음) (선택)	
조치내용		
참고사항	○ 이 통지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지방해양경찰청)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소속관서장

심사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사건	죄 명		
	원수사관서	사건번호	
이의제기 처리 내역	이의제기 접수일		
	조치 결과 통지일		
	통지받은 조치 내용 요지		
심사신청 사유(해당란 체크)	☐ 통지 기한(14일) 내에 조치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통지받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			
첨부서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 귀하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귀하의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사 건 번 호		
원수사관서		
심 사 결 과	1. 인용 (선택) : 원수사관서에 (재)조치를 요구함 2. 기각 (선택) : 원수사관서의 조치가 적정함 3. 각하 (선택)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 사 내 용		
조치사항 (인용시 기재)		

소속관서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u>소재수사 요청</u> 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u>소재수사 결과</u>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재</u> <u>확인 요청</u> ----- ----- --- <u>소재확인 결과</u> ----- ----- --.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8</u> <u>조제2항</u> ----- ----- ----- ----- ----- ----- ----- ----- ----- ③ ----- ----- ----- ----- -----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 공소청의 장-----.

④ -----

----- 공소청의 장-----

-----.

제7조의2(사법경찰관리의 의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
 ② (생략)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
 소청 직원의 -----
 ----- 공소청 직원이 --

 -----.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삭 제>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
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중대범
죄등 인지 통보) ① -----

----- 인지
통보서-----.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
사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
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
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
1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을 제시할 쟁점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방법과
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
용한다.

제55조의3(체포·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생략)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생략)

② (생략)

②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요청에 따른 의견서에 따른다.

제55조의3(체포·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서면 또는 영장을 복사한 사본-----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생 략)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
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
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
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
고서에 따른다.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
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
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
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③ (생 략)
④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하는 -----
----- 통
보서-----.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

----- 법 제245
조의5제1항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 준칙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

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생략)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
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 의견 -----
----- .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의견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요청서-----
-----.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

---- 의견 요청서-----
-----.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

----- 의견 요청서-----
-----.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의견을 요청

② (생략) <u><신설></u>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u>고등검찰청</u>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	<u>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재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 ----- ----- ----- --- <u>광역공소청</u>----- -----.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① ----- ---- <u>제47조제1항</u>----- -----
---	---

다.

<신 설>

제6장 수사의 경합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

람)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 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범죄인지서

2. 영장신청서

--.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3. 고소장, 고발장

④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사건기록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⑤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

제80조(신변보호) ① ----- 제4조의2제2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등) 사법경찰관은 혼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 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②
(생 략)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수사결과 통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추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
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
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
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
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
보 등) ② -----
---- 법 제197조의2제4항----.
<단서 삭제>

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

① ----- 법 제19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호-----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7호의3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④ ----- 제60

조제5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 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조제6항-----

--.

제107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등)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 제5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107조의3(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의 관리)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생략)

②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09조(법원송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제110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

제108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1조제2항 및 제3항---

-----.

제109조(법원송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 중 전자화가 불가능한 문서는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한다.

제110조(불송치 결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 바. (생략)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 하. (생략) 4. (생략) ② (생략)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	----- ----- ----- <u>경우</u>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 ----- ----- ----- ----- <u>공소청</u> ----- ----- 아. ----- ----- - <u>제51조제3항은</u> ----- ----- 자. ~ 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
---	---

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

----- 공소청송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제1항 중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245조의7제4항-----

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 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신 설>

-----.

④ ----- 법 제245조의7 제4항-----

-----.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를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를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
은 별지 제128호서식의 심사신
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